

‘23-2차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대상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기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토대로 전문 컨설팅사 사업전략 및 재무전략 컨설팅을 지원받아 사업재편 역량 제고

2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가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 * 사업재편유형(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전체 지원 가능
- ☐ 아래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아닌 경우 혹은 사업재편 계획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활력법에 따른 이행점검 보고 의무 미준수 및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

나 지원 규모 및 기간

- ☐ (지원 규모) 8개사 이내의 지원기업 선정, 지원기업당 정부출연금 80백만원 이내 지급

*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및 지원기업 수를 신청범위 내외로 조정 가능

- 정부출연금(사업비)은 컨설팅 비용 및 위탁회계법인 정산 비용*으로만 사용

*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구성 안내 사항 참고

-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 ☐ (공모 방식) 자유 공모

- ☐ (매칭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 4개사 중 1개사와 매칭

- 선정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의향서 제출(복수 선택)
- 선호도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지원기업 매칭
- 매칭 상황에 따라 매칭 의향 수행기관과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1개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기업의 50% 이하로만 매칭 가능
- 선정 후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컨설팅 요구 항목과 실제 컨설팅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용은 기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①사업전략, ②재무전략으로 세부적인 컨설팅 지원 내용은 지원 시 컨설팅 수행기관과 상담하여 지원할 수 있음

① **사업전략** : 사업재편 승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계획 상 사업재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 내부 분석, 시장 분석, 경영(인사, 노무 등)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전사적 방향성 제시

㉠ **내부역량분석** : 지원기업의 매출, 고용, 주요 사업 현황 및 고객 등 사업재편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 전반에 대한 내용 분석

㉡ **시장환경분석** : 국내외 산업/기술/경쟁사 환경 분석

㉢ **사업전략수립** : 내부역량, 시장환경 등을 분석하여 사업재편 목표 달성 전략 로드맵 구축

② **재무전략** : 사업재편 승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계획 상 사업재편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재무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재무 전략 수립으로 기업의 재무 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재무현황 분석** : 현행 재무비율 진단 및 분석

- 유사, 우수 기업 등의 재무 및 수익구조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재무관리계획 수립** : 사업재편 목표 및 사업전략에 따른 재무 전망, 투자 방향 및 관리방안 도출

- 사업재편 목표, 사업전략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의한 재무 전망 분석
- 재무구조의 안전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금조달방안 및 투자계획 도출
- 예산 및 인력 등 자원배분 전략 수립

㉢ **재무위험관리** : 기업 특성을 반영한 재무위험 분석 및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방안 도출

- 재무위험 평가를 통한 핵심 재무위험지표 도출
- 위험지표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방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도출

□ 세부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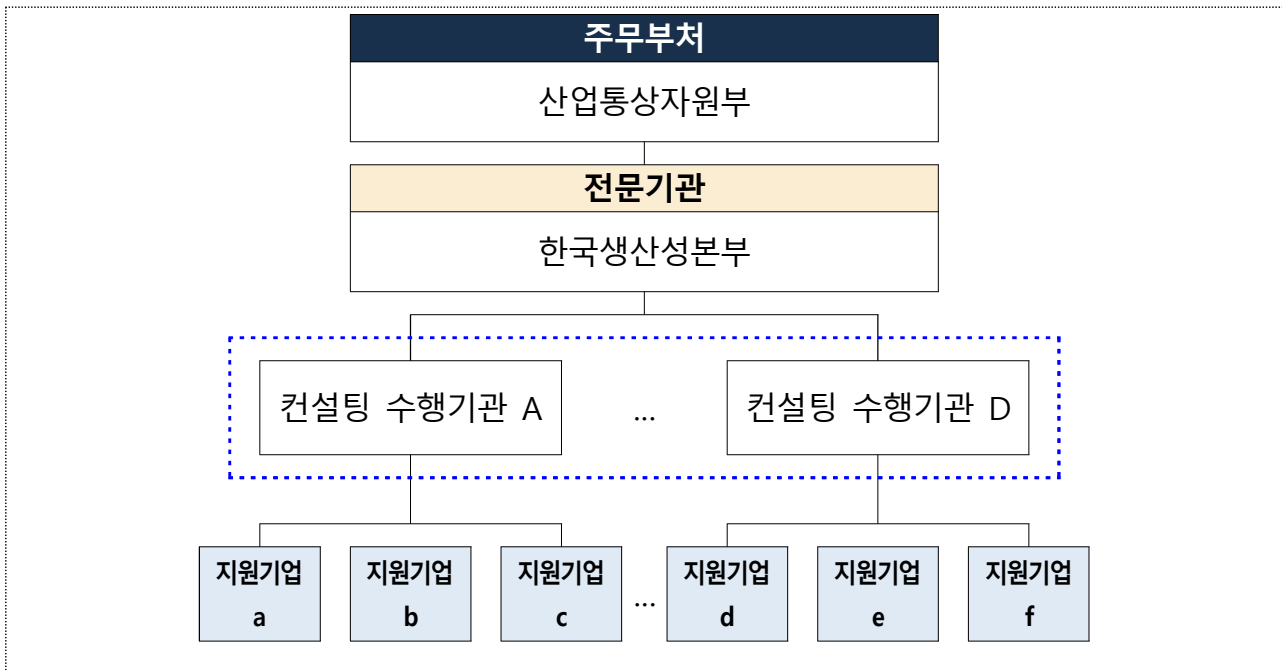
- 세부 추진 절차 및 수행기관 안내는 첨부 팜플렛 참고

구분			내용
컨설팅 내용	사업 전략	내부역량분석	●사업재편계획 검토 ●신사업 비전 및 추진 전략 검토 ●핵심 역량 진단(전략, 운영, 프로세스, 조직 및 인력 등) ●주요 사업 현황 검토 및 이슈 도출 ●사업재편 핵심 기술 검토 ●제품 개발 현황 검토
		시장환경분석	●시장 특성 및 트렌드 분석 ●지역별/주요 국가별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시장 구조 분석(산업 생태계, 밸류체인, 유통 구조, 원가 등) ●신산업 진출 분야 글로벌 선도 업체 벤치마킹 방안 등
		사업전략수립	●사업재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핵심 과제 도출 ●사업 추진 전략 로드맵 구축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신사업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역량 정의 및 필요 역량 확보 방안 수립
	재무 전략	재무현황 분석	●주요 재무 비율 추이 진단 및 분석 ●재무 진단(현금흐름, 수익구조, 유동성, 재무구조, 손익분석 등) ●유사/우수기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재무관리계획 수립	●사업재편 목표 및 사업전략에 따른 재무 전망 ●자금 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수립 ●예산 및 인력 등 자원배분 전략 수립
		재무위험관리	●재무위험 평가를 통한 핵심 재무위험지표 도출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소요 기간			3개월 내외

* 컨설팅 내용 및 기간은 최종 협의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추진 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



< 수행주체별 주요 업무내용 >

구분	기관명	주요 업무내용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및 정책 수립 ○ 총괄 관리 감독 및 주요 의사결정 등
전문기관	한국생산성본부	○ 사업 안내, 서류 접수 ○ 평가 및 협약(출연금 지급) ○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매칭 ○ 워크숍 진행 및 기타 사업관리 등
수행기관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이언컨설팅 한영회계법인	○ 수요기업 상담, 컨설팅 세부 계획 수립 ○ 사업재편계획 기반 사업/재무전략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종합의견서 제공 ○ 연차별 평가
지원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관리/집행/정산 ○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 제출 등 ○ 최종평가

□ 추진 절차

순번	구분	주요 내용
1	수행기관 선정	•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4개사 내외 선정 및 협약 체결 (컨설팅 수행기관 Pool 등록)
2	지원기업 선정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3	수행기관과 지원기업 매칭	•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시 지원기업 문의 대응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지원 • 최종 선정된 컨설팅 지원기업의 우선순위와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행기관과 매칭하여 최종 컨설팅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4	컨설팅 수행	• 수행기관은 매칭된 지원기업에 대해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
5	결과 보고 및 평가	• (수행기관) 매 기업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수행 내역을 제출 하고, 매 연차 종료 1개월 이전 해당 연차 컨설팅 수행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여 등록 유지 평가 시행 • (지원기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종합의견서와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평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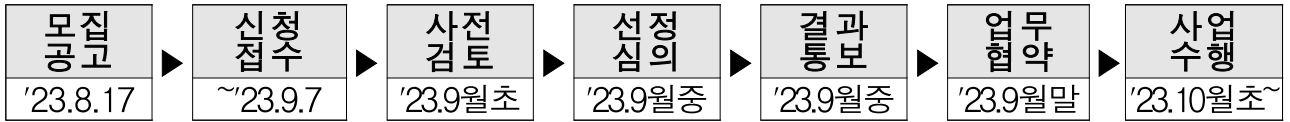
마 지원 제외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함
 - 신청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사업재편 승인기업 또는 담당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로 처리

3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가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사전 검토)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을 사전 확인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 (선정 심의)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역량 및 기대 효과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컨설팅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 기업활력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신산업판정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제/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 추가 가능
- ☐ (결과 통보) 최고, 최저점 제외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업무 협약) 정부출연금 지급 및 수행기관 매칭이 완료된 이후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나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점)
사업 수행 역량 (80)	지원 필요성 (20)	▣ 컨설팅 지원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재편계획 수행 혹은 컨설팅 분야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	20
	지원 기업 역량 (35)	▣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 CEO,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컨설팅 과제 수행 역량 및 수행 의지	15
		▣ 컨설팅 조직 구성 - 원활한 컨설팅 수행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20
	사업 목표 부합 정도 (25)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컨설팅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내용의 타당성	25
기대 효과 (20)	기대효과 (10)	▣ 컨설팅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 사업재편계획 내 지표 달성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 효과	10
	성과 활용 및 사후 관리 (10)	▣ 컨설팅 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 컨설팅 종료 이후 컨설팅 결과 활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적절성	10
합계		-	100

4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2023. 8. 17.(목) ~ 2023. 9. 7.(목) 18:00

☐ (접수처) 온라인 제출 (전자우편 : kwpark@kpc.or.kr)

* 접수 기간 이후 및 전자우편 외 타 경로로 접수한 경우는 인정 불가

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사업공고 또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www.oneshot.or.kr)에서 다운로드

순번	제출서류	제출 부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3	중소·중견기업 해당 증명 서류	1부
4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공문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다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전문기관	한국생산성본부 디지털정책센터	☎ 02-724-1227 ✉ kwpark@kpc.or.kr

5

관련 규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가 관련 법령 및 요령 등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나 선정 취소

- ☐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자격 미비 등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기업의 과실 또는 책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 ☐ 금융권 추천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음
- ☐ 해당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대상이 아님
- ☐ 사업 종료 후,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
- ☐ 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컨설팅 결과물과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향후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양식 별도 공지)
- ☐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 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 지원기업은 컨설팅 업무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참여율 50%이상) 1명 이상 배치 필수
- ☐ 신청서(붙임3)를 제출한 기업은 「산업 일자리 전환(노동전환) 컨설팅」이 함께 제공됨
-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